

# 태왕THE아너스 오페라 [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]

■ 기본 서류 [모든 계약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('21.06.30)이후 발행분에 한함]

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해당			
○		무주택 서약서	본인	• 건본주택비치
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○		인감증명서&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○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○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
○	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• 성명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
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
	○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발급기간 :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)
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
	○	임신증명서류 (출산증명서)	본인 (배우자)	•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
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• 건본주택 비치
	○	입양관계증명서 (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)		• 입양의 경우
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(주민번호 전체 표시 발급) -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(FAX수신 문서 가능)
○		소득증빙 서류 (서류 안내 참조)	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※ 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)
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	• 건본주택 비치 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○	기본증명서	직계 비속	•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
○		자금조달계획서	-	• 모든 주택형 제출

■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

- 위임장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통(아파트 계약 위임 본인발급용) , 대리인 신분증, 대리인 도장(서명)

태왕THE아너스 오페라 [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]

I 소득기준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외별이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맞별이	120% 이하	7,236,192원	8,513,046원	8,513,046원	8,872,376원	9,333,628원	9,794,879원
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외별이	100%초과 ~140%이하	6,030,161원~ 8,442,224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393,648원~ 10,351,106원	7,778,024원~ 10,889,232원	8,162,400원~ 11,427,359원
	맞별이	120%초과 ~160%이하	7,236,193원~ 9,648,256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872,377원~ 11,829,835원	9,333,629원~ 12,444,837원	9,794,880원~ 13,059,838원

- 기준소득 : 맞별이의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시 일반공급 3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을 선택해야 함.

- 상위소득 : 맞별이의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\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 ·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- ※ 월평균소득은 [연간소득 ÷ 근무 월수]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II 소득증빙서류 (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)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- 재직증명서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)	• 해당직장 •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/ 금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 -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	•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- 직증명서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	•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)	- 재직증명서 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(근로소득지급명세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	•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 면세사업자	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	•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-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※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	• 세무서
	신규사업자	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-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• 국민연금관리공단 • 세무서
	법인사업자	-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	• 세무서 •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-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표 -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• 세무서 •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•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/ 일용직 근로자	- 계약기간/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(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표(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)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-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• 해당직장 •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- 비사업자 확인 각서(별도서식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/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에 소득 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제출	• 견본주택	